

#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578호
----------	---------

제안년월일 : 2023년 04월 25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 1. 수정이유

-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나이 계산을 만(滿)나이에 통일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만〇〇세”로 규정하던 것을 “〇〇세”로 일괄개정하는 사항 중 일부 미반영된 조문을 수정함.

## 2. 수정의 주요 내용

- 안 제16조 중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정비대상 문구가 누락되어 이를 추가해 수정함

##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9호 중 “만18세”를 “18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0호 중 “만18세”를 “18세”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p>제16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4조제1항제9호 중 “만18세”를 “18세”로 <u>한다</u>.</p>	<p>제16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4조제1항제9호 중 “만18세”를 “18세”로 <u>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10호 중 “만18세”를 “18세”로 한다</u>.</p>

##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법규와 다르게 나이에 만(滿)을 표시하는 규정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만 40세”를 “40세”로, 같은 조 제4항 중 “만 5세”를 “5세”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노동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동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제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어르신(만 65세 이상)”을 “어르신(65세 이상)”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2세”를 “12세”로, “만 12세 이상 만 19세”를 “12세 이상 19세”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 19세 이상 만 39세”를 “19세 이상 39세”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0세 이상 만 19세”를 “10세 이상 19세”로 하고, 제4조 제2항 중 “만 21세”를 “21세”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만 40세 이상 만 65세”를 “40세 이상 65세”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만 15세”를 “15세”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제21조제4항제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만 39세”를 “39세”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9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0호 중 “만18세”를 “18세”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만 40세”를 “40세”로, 같은 조 제4항 중 “만 5세”를 “5세”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